



---

[ 2017. 1. 1. ] [ 2016 - 228 , 2016. 12. 1., ]

( ), 044 - 202 - 3226

「 , 」 16 9 1 ‘

1. .

서비스명	서비스내용	제공인력 자격기준
영유아발달 지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중재 서비스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복지법” 제72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이하 “언어재활사”),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이하 “청소년상담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이하 “초등학교 정교사”), 전문상담교사(이하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이하 “특수학교 정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의한 유치원정교사(이하 “유치원정교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보육교사(이하 “보육교사”),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이하 “간호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이하 “사회복지사”), “정신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정신보건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이하 “임상심리사”)</li> <li>“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문제행동아동이나 장애아동 재활 또는 영유아발달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li> <li>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재활학, 특수체육학 등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li> <li>②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 경력 6개월 이상</li> <li>③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 경력 3개월 이상</li> </ul> </li> <li>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재활학, 특수체육학 등 관련학과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li> </ul>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제행동아동·청소년의 정상적 성장을 위하여 문제행동아동·청소년 및 부모대상 심리 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언어재활사,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li> <li>“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인지,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li> </ul>

서비스명	서비스내용	제공인력 자격기준
	<p>등과 놀이, 언어, 인지, 미술프로그램 등 조개입서비스 제공</p>	<p>스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등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li> <li>②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li> <li>③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li> </ul> </li> <li>○ 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등 관련학과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li> </ul>
<p>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음악 이론 및 실기와 정서순화 프로그램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서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학과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li> <li>② 가족·사회·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공예, 무용, 순수미술, 응용미술 또는 음악 분야 석사 학위 및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의 정서프로그램 관련 실무경력이 3개월 이상인 자</li> </ul> </li> <li>○ 클래식프로그램 제공인력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악기 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li> </ul>
<p>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과다 사용 아동청소년이 중독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리검사 및 상담, 인터넷 게임 대체 활동 및 부모 상담 프로그램 등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서울시 I will 센터의 인터넷 중독 관련 상담과정 이수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만,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상담과정은 2015년까지 이수한 자에 한해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정신보건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정신보건임상심리사</li> <li>- 한국상담학회·한국심리학회 에서 발급하는 상담 관련 자격 취득 후 상담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li> <li>- 청소년(지도)학과, 교육학과, 아동(복지)학, 사회복지(사업)학, 심리학과, 상담학과, 상담심리학과 등 상담관련분야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 경력 1</li> </ul> </li> </ul> </li> </ul> </li> </ul>

서비스명	서비스내용	제공인력 자격기준
		<p>년 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 경력 6개월 이상</li> <li>▪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 경력 3개월 이상</li> </ul> <p>②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 자격 취득 후 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p> <p>○ 대체활동 및 맞춤형 사후관리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p> <p>① 청소년상담사, 초등학교 정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이하 “중등학교 정교사”), 유치원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소년지도사”),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직업상담사</p> <p>②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이하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p> <p>③ 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사회복지학과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활동 분야 실무 경력 1년 이상</li> <li>-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활동 분야 실무 경력 6개월 이상</li> <li>-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활동 분야 실무 경력 3개월 이상</li> </ul> <p>④ “자격기본법” 에 제17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코칭·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 학습코칭 관련 민간 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 라이프코칭·리더십·진로코칭·자기주도 학습코칭 분야 서비스 제공경력이 1년 이상인 자</p>
<p>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p>	<p>○ 아동청소년의 자기주도력 향상 및 미래 비전 형성을 위하여 비전 형성 프로그램(라이프코칭, 리더십·의사결정·문제 해결 기술 증진 프로그램, 진로 탐색 프로그램,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p>	<p>○ 비전형성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p> <p>① 청소년상담사, 초등학교 정교사, 중등학교 정교사, 유치원 정교사, 전문 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청소년지도사</p> <p>②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p> <p>③ 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사회복지학과 등 관련 학과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li> <li>-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 경력 6개월 이상</li> </ul>

서비스명	서비스내용	제공인력 자격기준
	<p>또는 비전형성 프로그램과 체험활동이 결합된 형태나 초기 3개월의 학습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형태의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관련실무 경력 3개월 이상</li> <li>④ “자격기본법”에 제17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 코칭·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 학습코칭 관련 민간 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 라이프코칭·리더십·진로코칭·자기주도 학습코칭 분야 서비스 제공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li> <li>○ 체험활동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소년지도사</li> <li>② 인문학, 사회과학, 관광학, 아동청소년학, 교육학, 자연과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과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실무 경력 1년 이상</li> <li>-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실무 경력 6개월 이상</li> <li>-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실무 경력 3개월 이상</li> </ul> </li> </ul> </li> <li>③ 비전형성 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li> <li>○ 학습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해당 교과목 관련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비전형성 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li> </ul>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만 및 허약 아동과 부모에게 신체적 조건에 맞는 식습관을 포함한 영양관리, 생활습관개선 및 운동지도와 함께 건강교육, 정보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스포츠지도사(이하 “스포츠지도사”),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른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다만,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li> <li>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li> <li>-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 경력 6개월 이상</li> <li>-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 경력 3개월 이상</li> </ul> </li> </ul> </li> <li>○ 건강교육 및 영양관련 프로그램 운영 제공인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이하 “영양사”), 초등학교 정교사,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사(이하 “보건교육사”), 간호사</li> </ul>

서비스명	서비스내용	제공인력 자격기준
노인맞춤형 운동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령자등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맞춤형 운동서비스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스포츠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5에 따른 노인 스포츠지도사, 다만,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li> <li>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li> <li>-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li> <li>-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li> </ul> </li> </ul> </li> <li>건강교육 및 영양관련 프로그램 운영 제공인력은 영양사, 초등학교 정교사, 보건교육사, 간호사</li> </ul>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운동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산모 등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맞춤형 운동 서비스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스포츠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 스포츠지도사(장애인대상에 한함), 다만,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li> <li>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li> <li>-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li> <li>-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li> </ul> </li> </ul> </li> <li>건강교육 및 영양관련 프로그램 운영 제공인력은 영양사, 초등학교 정교사, 보건교육사, 간호사</li> </ul>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성질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요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사</li> </ul>
정신건강 토달케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신질환자의 조별연과 개입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적응도록 상담, 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li> </ul>

3. 가

서비스명	서비스내용	제공인력 자격기준
	기상황개입, 증상 관리, 일상생활지원 등 서비스 제공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살 예방을 위하여 자살 위험군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와 사례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li> </ul>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행이 힘든 장애인·노인에게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전문돌봄인력이 동반하여 특화된 전문 돌봄 여행서비스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복지사, 간호사,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li> <li>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li> </ul>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아동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점검 및 유지보수 등 서비스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양보호사, 재활공학전문가 등 시·도에서 정한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li> <li>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렌탈서비스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li> <li>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렌탈서비스 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li> <li>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렌탈서비스 분야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li> </ol> </li> </ul>

서비스명	서비스내용	제공인력 자격기준
다문화가정 아동발달지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교육과 사회성 향상을 위하여 우리말 배우기, 일상생활, 학습, 정서지원 서비스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초등학교 정교사, 중등학교 정교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언어재활사</li> <li>“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상담사, 독서지도사, 가정복지사 민간자격 취득 후 다문화가정 지원 서비스 제공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li> <li>가정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상담학, 아동복지학, 아동학, 유아교육학, 보육학, 가족복지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학과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다문화가정 지원 서비스 제공 실무경력 1년 이상</li> <li>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다문화가정 지원 서비스 제공 실무경력 6개월 이상</li> <li>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다문화가정 지원 서비스 제공 실무경력 3개월 이상</li> </ul> </li> </ul>

---

4. 가 . . . . .  
가 , . . . . .

5. 가. 2 “ ” ( 2014 - 43 ) “ ”  
 . , , .  
 2 “ ” ( 2014 - 43 ) “ ”  
 300 .

6. 「 . ( 334 )  
 , 2019 12 31 .

< 2016 - 228 ,2016.12.1.>  
1 ( ) 2017 1 1 .  
2 ( )  
 6 .  
 , 가  
 ,  
 1 .